

## 200-046. 사상사건 기소장 결정판결 사철

■ 1932년 1월 20일부터 1932년 12월 26일까지 검사국에서 법원에 청구한 예심청구, 공판청구 및 법원의 결정, 판결 등 총 33건의 문건 수록 (동일한 사건을 분리하였으므로 사건을 압축하면 14건)

- 범죄사실은 대부분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 등으로 모두 사상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조선의 독립운동 및 공산화운동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인 江口文夫사건만은 문구상의 이권문제이다.
- 이들을 관련자 위주로 분류하여 개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崔信泳·金龍雲·梁珣模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 중국 北京에서 反帝大同盟 韓人支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국한 후 경성에 은신하다가 검거되어 공판을 청구한 바, 법원은 1932년 7월 4일 崔信泳·金龍雲에게는 징역 2년, 梁珣模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2. 李南來는 출판법 위반으로 1932년 3월 8일 공판을 청구한 바, 법원은 1932년 7월 16일 금고 6월을 선고하였다. 혐의내용은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발매금지된 『일본공산당 공판투쟁 방청기』와 『프롤레타리아 가곡집』을 반포한 혐의이다.
- 3. 일본인 江口文夫는 水原神社 神輿를 同業組合 事務室에 돌진시켜 불경을 범한 혐의로 1932년 3월 30일 공판이 청구되고, 1932년 7월 16일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 1백엔을 선고받았다.
- 4. 全柱殷·金在淳·李信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죄로 1932년 4월 4일 공판이 청구되고, 1932년 7월 16일 판결에서 全柱殷은 징역 8월, 金在淳·李信植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사건내용은 경성 제2고보 교장을 구타 한 것이다.
- 5. 安鍾冕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금품제공 혐의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이 청구되고, 1932년 7월 16일의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6.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崔金莖 등 6명에 대한 공판청구서와 판결서 인바, 1932년 6월 16일 민족의식화운동의 일환으로 격문을 인쇄하고 중학생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공판이 청구되었으며, 1932년 7월 16일 판결에서 崔金莖·洪炳模·金萬有·李銅材는 징역 1년, 康正壽·李甲文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7. 柳榮京·姜益秀·全柱殷·李性魯·鄭在英은 독서회 조직 등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을 청구하였는 바, 예심종결결정에서 免訴결정을 받았다.
- 8. 河崙圭는 보안법 위반, 공갈미수로 공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선독립운동의 군자금 모집을 병자하여 공갈한 사실로 9월 5일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9. 李雲赫 외 11명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심청구서와 판결서이다. 朝鮮學生前衛同盟을 조직하여 조선독립을 도모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활동으로 예심을 청구하였으며, 7월 7일 예심종결 결정에서 12명 전원이 공판회부로 결정되었다. 9월 19일의 판결에서 李雲赫은 징역 6년, 宋道浩·金基範·陳玉振·韓貴才는 징역 3년, 姜昌舉는 징역 2년 6월, 趙奎憲·李正淳은 징역 2년, 李龍鍾·韓保國·韓己相은 징역 1년 6월, 姜渭璜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10. 愼弦重 등 21명에 대하여 1931년 11월 16일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예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거의가 京城帝國大學生으로서 사회과학의 연구목적으로 도서회를 구성하고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城大反帝部를 결성하고, 京城都市學生協議會의 설립, 反帝學生新聞의 발행 등 반정부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1932년 9월



15일 예심종결 결정에서 余重龜·柳榮京·洪必善은 免訴되고, 그 밖의 전원을 공판에 회부하도록 결정하였다. 1932년 11월 24일 판결에서는 愼弦重 징역 3년, 李亨遠·安福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吉川朝彦·曹圭瓚·櫻井三良·崔翔奎·姜若秀·朴現柱는 징역 2년, 平野而吉·高晶玉·崔基晟·朴勝珉·車啓榮·李成學·金鍾範·金學俊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선고한 3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11. 朴道南은 1932년 9월 3일 치안유지법 위반 및 횡령으로 공판청구한 바, 사건내용은 비밀결사 鮮內工作委員會 穩城支部를 조직한 혐의이며, 판결은 철해져 있지 않다.
12. 張洪琰는 동년 9월 29일 보안법 위반으로 공판을 청구하였으며, 사건내용은 광주학생 사건을 계기로 示威를 목적으로 하여 京城女商, 淑明女高, 槿花, 梨花, 同德, 女美 등의 여학생을 선동한 혐의이다.
13. 張錫天은 동년 10월 21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청구를 하였다. 사건 내용은 조선 청년동맹, 광주청년동맹, 전남청년연맹 및 신간회 광주지회 등에 가입하여 청년운동, 민족운동 등을 한 혐의이다.
14. 安昌浩(島山)는 1932년 7월 25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청구를 하였으며, 사건내용은 大韓臨時政府 經濟後援會 개최, 韓國獨立黨을 조직하여 理事에 취임, 對日戰線統一同盟 결성 등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에 참가 활동한 혐의이다. 동년 10월 25일 예심종결 결정에서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6일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